

옥외광고물(가로등현수기)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055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1. 27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현재 구청에서 직접 신고 접수 및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현수기와 관련하여 적기 게시 및 하강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의 부족으로 가로등현수기가 승인 받은 구간이 아닌 다른 구간에 잘못 게시되거나 신고기간 경과 후 제때 하강 되지 않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하고자,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: 옥외광고물(가로등현수기) 운영

나. 근거법규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다. 위탁의 필요성

- 가로등현수기를 신고한 내용에 맞춰 정해진 구간에 설치하고, 적기에 게시 및 하강할 수 있으며
- 특히,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히 하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소요장비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 필요

라. 위탁사무 내용

- 민간 및 공공기관 가로등현수기 이용 신고에 따른 신고수수료 및 도로점용료 등 납부와 민원서류 접수 대행, 게시물 게시·철거

마. 위탁시설: 강북로 등 11개 구간 375조

바. 위탁기간: 2023. 4. 1. ~ 2026. 3. 31.(3년)

사. 수탁자 선정방법: 공개모집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사

아. 2023년도 소요예산: 없음

3. 추진일정

-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: 2월
-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: 2월 ~ 3월
- 지정기관 선정: 3월
- 지정협약 체결: 3월

4. 참고사항

- 가로등현수기 운영구간
- 근거법규

참 고 사 항

가로등현수기 운영현황

연번	도로명(구간)	현수기 수량	비고
	계	375조	
1	강북로	30	
2	명륜로	10	
3	번영로	60	
4	북부순환도로	60	
5	신삼호교	20	
6	장춘로	20	
7	젊음의 거리	10	
8	종가로	80	
9	태화강국가정원 일대	30	
10	태화교	15	
11	태화로	40	

※ 가로등 1개당 2개 1조

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)

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<개정 2021.10.25.>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제6조 (승인 및 동의)

-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(최초위탁, 재위탁, 재계약 포함)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,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,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를 긴급하게 선정해야 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위탁기간 1년 이하의 1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
2. 청소, 방호 등 연례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